

【붙임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고 제2016- 호

2016년도 사회단체 구정참여사업 공모 공고(안)

서대문구에서는 안전한 먹거리와 자연생태환경을 위한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국민의 식생활 의식을 개선하고, 사회단체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회단체 구정참여사업을 공모하오니 뜻있는 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6년 1월 27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신청기간 및 장소

- 기 간 : 2016. 2. 3(화) ~ 2016. 2. 17(수)
- 장 소 : 서대문구청 제4별관 교육지원과 친환경급식지원센터
- 방 법 : 방문 및 우편 접수
(방문신청은 근무시간 내, 우편접수는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2. 신청자격

-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단체등록증 발급 단체
 -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않는 단체
 - 단체 중앙조직이 비영리단체(법인)로 등록된 경우 산하 구협의회(위원회)를 비영리단체(법인)로 간주함
-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 규정이 있는 경우
- 안전한 먹거리 및 자연생태환경 관련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가 없는 경우

※ 제외대상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교리의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축·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 국가나 서울시의 비영리민간단체 참여사업 등 동일(또는 유사)사업에 대하여 중복 신청한 단체의 경우 또는 선정시점이 달라 이중 선정·지원되었을 경우 선정 취소 및 환수조치

3. 사업추진기간 : 2016년 3월 ~ 11월

4. 공모사업

- 사업 분야 : 사회기초질서 및 친환경 녹색도시

사업분야	세부사업
<p>사회기초질서확립 및 친환경 녹색도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한 먹거리 및 친환경 급식 사업 ○ 바른 식생활 및 텃밭등 체험 교육 ○ 자연생태환경 조성 사업 ○ 식생활의식개선운동

5. 지원규모 및 범위 : 총 사업비 11,284천원

- 사회단체 사업비 : 총 사업비 이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 지원 가능(단, 자부담 편성 원칙)
 - 서대문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후 최종 지원액 결정
 - 사회단체 운영비 : 「지방재정법」 제30조의 2 제 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6.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각 2부 서면제출 및 이메일(2013080221@sdm.go.kr)전송
- 비영리단체등록증, 단체규약(정관, 회칙, 회원명단 등) 각 사본2부
☞ 신청양식은 첨부파일 다운로드

7. 선정 및 통보, 사업실행계획서 제출

- 선정통보 : 2016년 3월
- 선정기준 : 사업계획 및 예산의 적정성, 공익활동실적, 전년도 사업평가결과 등
- 최종선정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선정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사업별로 상세히 기재
- 사업실행계획서 제출 : 2016. 3월
 - 선정 된 단체는 보조금 계좌를 별도 개설하고 보조금 신청서 및 사업실행계획서 제출

8.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단체는 세부사업추진 약정 체결 후 보조금 지급
- ※ 사업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별로 교부하며, 「지방재정법」제32조의5에 따른 수행상황 점검 결과 부적절한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그 금액만큼 감액 후 교부
-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보조금 결제전용카드 사용
- 보조금 정산 :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
- 정산보고 : 사업완료 시 보조금정산서, 보조금집행세부내역서, 사업추진실적보고서, 지출결의서, 통장거래내역사본, 영수증, 사진등 증빙자료 첨부

9. 기타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 기재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보조금을 환수하거나 관련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된 지방보조금사업자에게는 다른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5년의 범위 내에서 제한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교육지원과 친환경급식지원센터(☎330-11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